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6. 9. .
발 의 자	윤종호 의원 외 5명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16. 9. .
발 의 자 윤종호, 김태근, 박세진
안주찬, 임춘구, 한성희
(6명)

1. 제안이유

학생들의 배움터인 구미시에 전입을 장려하여 정주의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총무과 협의됨

다. 검토부서 : 총무과(기획예산담당관실-8088(2016.06.30)호)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 대학생”이란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현금, 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급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한 후 최초 한 번만 지급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급 시기는 지원 금액 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 상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읍면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 대학생도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입 대학생 지원금 지원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사 항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입일자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재학사항	학교명/학과			학년

지원방법 신 청	[] 현금 [] 상품권				
	현금 선택 시 작성하는 란입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구미시 전입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2. 통장사본(현금지급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직급	성명	(인)	읍·면·동장	인
----------------	----	----	-----	--------	---

전입 대학생 지원금 관리대장

[illegible]

※ 비고 : 지원방법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기록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장은 전입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

→ 전입 대학생 지원금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1) 관내 대학교 재학생중 타 지역에서 전입온 학생 중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게 2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 시기별로 1년에 10만원씩 2년간 지급으로 추계

- (2)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a)	보통교부세	-	1,994,800	1,994,800	997,400	997,400	5,984,400
세출(b)	지 원 금	23,600	997,400	997,400	498,700	498,700	3,015,800
총 비용 (a-b)		-23,600	997,400	997,400	498,700	498,700	2,968,600

※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시 지자체 인구1인당 19~20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3,600	1,994,800	1,994,800	997,400	997,400	6,008,000
민 간							
기 타							
합 계		23,600	1,994,800	1,994,800	997,400	997,400	6,008,000

5. 부대의견

- 세입예산은 인구 수당 받는 보통교부세 금액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세출예산은 실제 신청자 수 및 신입생, 타 지역 출신 총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재정 소요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신주선
연락처	054-480-6764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구미시 대학생 현황 (2015년 기준)

학교명	신입생 수	전체학생 수	출신지역별 학생 수		기숙인원 수	
			구미시	타시군구	수용인원	전입인원
합 계	5,873명	18,047명	3,173명(25%)	9,974명(75%)	5,127명	236명
구미대	2,712명	5,492명	2,339명(42%)	3,153명(58%)	1,047명	3명
폴리텍	481명	709명	140명(19%)	569명(81%)	400명	6명
경운대	1,230명	4,900명	과약 안됨	과약 안됨	980명	53명
금오공대	1,450명	6,946명	694명(10%)	6,252명(90%)	2,700명	174명

2. 산출 근거

○ 2016년

- 세출 : 현재 타 지역 출신 전입학생수(236명) × 지원금(10만원) = 2,360만원

○ 2017년 ~ 2018년

- 세입 : 타 지역 출신 학생 수(9,974명) × 보통교부세 (20만원) = 199,480만원
- 세출 : 타 지역 출신 학생 수(9,974명) × 지원금(10만원) = 99,740만원

○ 2019년 ~ 2020년

- 세입 : 전년도 및 당해년도 타 지역 출신 신입생 수(4,987명) × 보통교부세(20만원)
= 99,740만원
- * 전부 수령한 뒤 타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로 가정
- 세출 : 전년도 및 당해년도 타 지역 출신 신입생 수(4,987명) × 지원금(10만원)
= 49,870만원